임시 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5년 8월 24일(월) 17:00-17:30

❑ 개최장소 : 이랜드재단 회의실

❑ 총이사수 : 7명

❑ 출석이사 : 이경준 이사, 이태웅 이사, 윤형주 이사, 박영희 이사 이상 4명

❑ 개회선언

▶ 이경준 이사장 :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 4명이 참석하여 주셨으므로 2015년도 임시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임시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호 의안> 2015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이랜드재단 2015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영일 사무국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영일 사무국장 : 이랜드재단은 보건복지부 승인 기관으로서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을 하여야 하지만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에 기본자산편입예외 승인을 받으면 보통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시행령 제16조제1항 '공익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이에 2015년 기부금에 대해 기본재산예외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이태웅 이사 : 이랜드재단의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예외승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영희 이사 : 이랜드재단의 정확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기타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경준 이사장 : 없으시면 2015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심

의 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 : 동의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본 건 '2015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이 결의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 이경준이사장 : 이상으로 본 이사회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 임시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폐회시각 17시 30분

2015년 8월 24일

재단법인 이랜드재단

이사장 이 경 준 (인)

이 사 이 태 웅 (인)

이 사 윤 형 주 (인)

이 사 박 영 희 (인)